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11일, 한정애의원 등 12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 02.) 상정 후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및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2026. 3. 24.)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반
영폐기)

제3차 행정안전위원회(2026. 3. 26.)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육아휴직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제한적이어서 실질적인 돌봄수요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신청의 범위가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녀의 연령·학령을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하면서,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규정하여 공무원의 자녀양육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71조제2항제4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개정안들은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 요건을 확대하여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이 가능하도록 확대하려는 것으로, 특히 한정애의원안은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경우에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로 추가 확대하려는 것임.

공무원의 자녀돌봄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보다 가정친화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정안들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¹⁾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및 학령을 현행 공무원과 같이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근로자와의 형평성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적정 연령 등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아울러,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자녀의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의 경우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을 일반 휴직보다 추가 확대하려는 한정애의원안은 현행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5호²⁾ 및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제5호³⁾에서 규정하는 조부모, 부모(배우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국가공무원법」

제71조(휴직) ②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72조(휴직 기간) 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다.

8. 제71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 기간 중 총 3년을 넘을 수 없다.

3) 「지방공무원법」

제63조(휴직) ②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5. 조부모,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정한다.

자의 부모 포함),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가족돌봄휴직제도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폐기

제64조(휴직기간) 휴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제63조제2항제5호에 따른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